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333호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조 례

○ 조	례 제 137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	례 제 137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조	례 제 137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8
○ 조	례 제 137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조	례 제 137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 조	례 제 138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조	례 제 138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29
○ 조	례 제 138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33
○ 조	례 제 1383 호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38
○ 조	례 제 1384 호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조	례 제 138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조	례 제 138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조	례 제 138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56

규 칙

○ 규	칙 제 93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62
-----	---------------------------------------	----

훈 령

○ 훈	령 제 33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67
-----	---------------------------------------	----

공 고

○ 공	고 제 1 8 1 1 호	공유일반재산(만수동 616-1) 매각입찰 공고	72
○ 공	고 제 1 8 4 6 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사업인정 관련 의견 청구 공고	77
○ 공	고 제 1 8 5 4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8
○ 공	고 제 1 8 5 6 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 시송달 공고	81
○ 공	고 제 1 8 5 7 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84
○ 공	고 제 1 8 6 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 중로 1-10호선]보상계획 열람 공 고	86
○ 공	고 제 1 8 6 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93
○ 공	고 제 1 8 7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98
○ 공	고 제 1 8 7 8 호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105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4 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106

고 시

○ 고	시 제 1 5 5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운연어린이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7
○ 고	시 제 1 5 6 호	도로명주소 고시	108
○ 고	시 제 1 5 9 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공사완료 고시	111
○ 고	시 제 1 6 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14
○ 고	시 제 1 6 2 호	도로명주소 고시	116
○ 고	시 제 1 6 3 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고시	118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23조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고자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세부사업은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명 삭제 및 신설(안 제23조)
 - 4.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 삭제
 - 9. 남동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사업 → 삭제
 - 20.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사업(신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남동소래아트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예산담당”을 각각 “소관사무의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무위임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직무위임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책임전담부서	비 고
무 상 귀 속		1,394,632	100.0	-	-
	도 로	326,333	23.4	-	-
	2 0 m 이 하	209,637.2	15.0	건설과	-
	광 장	11,729	0.8	-	-
	일 반 광 장	3,719	0.3	공원녹지과	광1
	녹 지	61,216	4.4	공원녹지과	-
	연 결 녹 지	6,584	0.5		연1 ~ 연2
	완 충 녹 지	54,632	3.9		완1 ~ 완19
	공 원	994,189	71.3	공원녹지과	-
	근 린 공 원	966,237	69.3		늘솔길 공원외 4개소
	소 공 원	6,446	0.5		나루 소공원
	어 린 이 공 원	21,506	6.9		꿈꾸는 어린이공원외 7개소
	공 동 구	L = 1,155m		건설과	면적 : 9,755㎡
	하 수 도 (우 수 관 로)	L = 19,742m		건설과	D450mm ~ BOX 2@4.0×1.5m
	하 수 도 (오 수 관 로)	L = 10,623m		건설과	D400 ~ 600mm
기 부 채 납		128,586	100.0	-	-
기 반 시 설		16,317	12.7	-	-
	공 공 청 사	3,349	2.6	-	-
	동 청 사	1,735	1.3	총무과	논현고잔동
	도서관(예정)	1,109	0.9	평생교육과	-
	공동구관리사무소	505	0.4	건설과	-
	도 서 관	1,933	1.5	평생교육과	소래도서관
	문 화 시 설	9,432	7.3	도시관리공단	남동소래아트홀
	쓰 레 기 집 하 장	1,603	1.3	청소과	소래·논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사무이관, 사무분장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성이 완료된 공공시설 현황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소래아트홀의 사업주체 현행화 (제5조)
 - 남동소래아트홀 ⇒ 도시관리공단 (제5조)
-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현행화
 - 예산담당 ⇒ 소관사무의 담당 (제6조제1항)
- 법령체계에 맞추어 조례에서 하위 규칙 준용 조항 삭제 및 개정 (제6조제2항)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명칭 현행화 (별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로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
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
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
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
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18조제2항 중 “『인천광역
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⑫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제

7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2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②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③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③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③⑫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등 12건 (본문)
 - 실비변상조례, 표창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의 개정 44건 (부칙)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동의 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5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9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13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2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제명 및 제1조, 제2조)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2016년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동으로 지정된 5개동(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필두로 동별 복지허브화 사업일정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 적용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폐지, 종이팩 구분)
2. 병 류
3. 캔 류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폐건전지

9. 폐형광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 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되어있어 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 재활용에 관한 목적 조항 (제1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규정 (제2조부터 제5조)
-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 분리수거 대상 (제6조)
- 재활용사업자의 공유재산 대부 특례 규정 (제9조)
- 現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다” 로 명시 (제10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을 “위촉”으로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을 “영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 2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3천만원 이상인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출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대상 범위 확대 등 개정사항을 인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사항 상위법을 인용함 (제2조 제2항)
- 위원의 해촉 대상 상위법을 인용함 (제11조)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내용 정비 및 확대사항 상위법을 인용함 (제1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중복 규정한 조항 삭제로 조문 축소 (46조 → 9조)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전산 송부일 변경 (제4조)
 -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 명확화 (제7조)
 - “전체 지방세”를 “지방소득세(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재산분)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제1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 → 15조)
-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함 (제1조 ~ 제3조)
-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종과 대상지역 등을 규정함 (제4조 ~ 제1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공제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최소납부 세제 합리적 운영(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기한의 특례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제5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제6조)
-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최소납부세제 도입대상 및 제외대상 선정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통근버스 운행 사업 등 산업단지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일자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의 범위에 공동통근버스 운행 사업 명시 (제5조제6호)
-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 추진 조항 신설 (제7조)
- 업무의 위탁 조항 신설 (제8조)
-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지원 가능 명시 (제9조제5호)
- 일자리 창출 유공 기관 등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제1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함으로서 법령보다 강화된 위탁기간에 대한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관련 상위법령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함(5년이내, 1회에 한하여 ⇒ 5년)
(제13조)
- 노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로서 부칙으로 동시에 개정함 (부칙 제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3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3조제4항 전단 중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불참한 때”를 “불참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를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

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동 의 서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내용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해촉된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반부패·청렴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자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 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축 장

성명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을 올바르게 인용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위촉방법, 자격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제3조)
- 위원장 권한 및 회의 운영관련 (제5조제4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12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제1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6년 12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13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부 동 산 가 격 공 시 위 원 회 구 성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의 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자문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6. 9.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제명)
- 위원회의 기능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확대함 (제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제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강화함 (제4조, 제5조)
- 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제6조, 제10조, 제12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9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 구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운영규칙 등 12건
 - 실비변상조례, 표창조례를 인용한 다른 규칙의 개정 8건 (부칙)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제3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해외파견공무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해외파견공무원근무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통계사무처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계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관리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관리통제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관리 통제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동향보고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동향보고업무처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동향보고 업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관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남동구동행정지도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동행정지도감독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행정 지도·감독 규정 ”으로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영조물등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영조물등관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조물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3조 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송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송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서 송달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비자보호 업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림쉼터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림쉼터관리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열림 쉼터 관리·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6조 인천광역시남동구건설공사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건설공사시험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공사 시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설 공사 검사업무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하수사용계측기봉인기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하수사용계측기봉인기취급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사용 계측기 봉인기 취급 규정”으로 한다.

제19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시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시설관리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시설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0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공원관리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공원관리원근무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공원관리원 근무 규정”으로 한다.

제2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훈령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 구 훈령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해외파견공무원근무규정 등 22건
 - 실비변상조례, 표창조례를 인용한 다른 훈령의 개정 1건 (부칙)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11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

나. 매각재산의 표시

대상토지	지목	현황	면적(m ²)		매각예정액(원)
			지적	매각	
만수동 616-1	전	나대지	181	181	56,281,500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입찰기간		개찰집행		비고
시작	마감	일시	장소	
2016.12.21(수) 〔 10:00 〕	2017.1.5(목) 〔 16:00 〕	2017.1.6(금) 〔 10:00 이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마친 자

4. 현장설명 안내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별도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현황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사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관련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 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환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

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8. 입찰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한 가격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onbid.co.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찰결과-공공기관입찰결과 또는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금액납부가 입찰금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체결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다. 구비서류

- ▶ 신분증,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인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11. 매각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금 :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

나.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구가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전액 납부

다.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재산활용에 관한 제반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반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 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공매공고 - 연기공고 - 취소 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마.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반 수속은 매수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본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절차,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지장물 등의 제거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법시행령 포함)」에 의합니다.

13. 기타 문의처

가.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나. 기타 매각재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032-453-2272)

위치도 및 현장사진(만수동 616-1)

위 치 도



현장사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사업인정 관련 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 칭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 사업규모
 - 농산물 도매시장 면적 A=170,901m²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경제산업국 농축산유통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9. 8.31.
- 열람 기간 : 2016.12.23. ~ 2017. 1. 6.(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 12. 23. ~ 2017. 1. 6.(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54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12.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12.20. ~ 2017. 1. 4.(15일간)
3. 공시대상 : 별 첨 참 조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 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6-6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152QMI09014104 등록폐지내역없음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12월 6일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0-46 ○ 보관장소 : 기전폐차사업소(032-814-4400)
	2016-7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5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11월 28일 - 방치장소 : 논현동 및 소래포구 일원(도시경관과 대집행 건)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차종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1,2차)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견인 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650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자 미상	논현동 590-46	2016. 12.6.	기전폐차 사업소	032-814-4400	
2	653	등록번호판없음(서울영등포아5197)	이륜차	이륜차	조*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길 *, ***호(신길동, **** 골든뷰 오피스텔)	16.11.8.	16.11.24.	기타	간석동 225-324 주차장 내	2016. 10.25 .	기전폐차 사업소	032-814-4400	
3	661	18도9952	마티즈 1.0 DOHC	승용경형	동*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번길**, *층(중앙동3가)	16.11.8.	16.11.24.	기타	구월아시아드선수촌2단지 지하2층 201동 앞	2016. 11.3.	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4	664	25주7005	그랜저XG	승용대형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동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16.11.8.	16.11.24.	기타	만수1동 963 우미빌라 앞	2016. 11.2.	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8	772	등록번호판없음(5대)	이륜차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자 미상	논현동,소래포구일원(도시경관과 대집행 건)	2016. 11.28 .	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10	2015-54 3	43가3519	에쿠스	승용대형	박*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 **동 ***호(굴현동, ***트레빌1단지)	16.8.3. 16.11.8.	16.8.16. 16.11.24.	기타	간석동 9-19번지	2016 -01-15	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11	2015-60 3	울산32무369 2	NEW EF쏘나타	승용중형	강*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길 **-(개봉동)	16.8.3. 16.11.8.	16.8.16. 16.11.24.	기타	남동구 서창동 553-3번지(미림하우스)	2016 -01-28	기전폐차 사업소	032-814-44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56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을 위반한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16년 12월 21일 ~ 2017년 02월 10일(2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역

연 번	차량 번호	성명 (상호)	주사무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1	인천81바 1456	길○희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동 ****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일시: 2016.11.26. 01:57 -장소: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2	인천84바 8023	강○한	남동구 장아산로218번길 3, ***호 (서창동, ***는집)	-일시: 2016.11.26. 02:03 -장소: 서창동 공영주차장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3	인천84바 9453	박○섭	남동구 백범로297번길 30-1, *** (간석동, **하이츠)	-일시: 2016.11.26. 02:55 -장소: 간석동 간석LH 정문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4	인천84바 9576	서○석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일시: 2016.11.26. 01:40 -장소: 만수동 담방공원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5	인천84바 9618	박○현	남동구 백범로294번길 15, ***동 ****호(간석동, 인천간석LH1단지)	-일시: 2016.11.11. 02:00 -장소: 부평구 부흥북로107번길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6	인천86바 6705	김○훈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동 ***호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일시: 2016.11.26. 01:42 -장소: 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 화물
7	인천99아 4321	박○영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일시: 2016.11.18. 01:26 -장소: 월곶동 SK주유소 삼거리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일반 화물

다. 안내사항

1.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57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을 위반한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16년 12월 21일 ~ 2017년 01월 10일(2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역

연번	차량 번호	성명 (상호)	주사무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1	인천81바 3178	태○식	남동구 석산로131번길 50, *동 ***호(간석동, ***스빌)	-일시: 2016.10.15. 02:04 -장소: 간석동 이화공원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2	인천84바 1107	황○태	남동구 포구로 98, ****동 ****호 (논현동, 주공아파트)	-일시: 2016.10.15. 03:30 -장소: 논현동 주공13단지 -내용: 차고지의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3	인천84바 4158	김○재	남동구 구월말로91번길 3, *동 ***호(만수동, **빌리지)	-일시: 2016.10.15. 02:40 -장소: 서창동 555-3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 화물
4	인천84바 9282	서○원	남동구 서창남로 2,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12단지)	-일시: 2016.10.22. 02:45 -장소: 논현동 인더스파크역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 화물
5	인천84바 9299	권○문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13, *동 ***호(간석동, 청실아파트)	-일시: 2016.10.15. 02:21 -장소: 간석동 대호익스프레스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6	인천84바 9576	서○석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일시: 2016.10.15. 03:02 -장소: 만수동 담방배드민턴장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연 번	차량 번호	성명 (상호)	주사무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7	인천84바 9861	주○순	남동구 석촌로6번길 ***, ***호(간석동)	-일시: 2016.10.15. 03:08 -장소: 도림동 669-14 (이삿집) -내용: 차고지의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 화물
8	인천85사 1815	이○경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 ***동 ***호(논현동, *****)스트타워)	-일시: 2016.10.22. 02:15 -장소: 논현로46번길 에스애피코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 화물
9	인천85아 4107	김○순	남동구 석정로579번길 ***, ***호(간석동)	-일시: 2016.10.15. 02:18 -장소: 간석동 석정공원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 화물
10	인천99아 4448	민○원	남동구 도림로34번길 11-13, ***동 ***호(도림동, **빌라)	-일시: 2016.10.15. 03:00 -장소: 도림동 도림제일교회 앞 -내용: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 화물
11	인천99아 8907	곽○빈	남동구 담방서로23번길 5, ***동 ****호(만수동, 이삭아파트)	-일시: 2016.10.21. 02:52 -장소: 동구 만석어린이 공원 -내용: 차고지의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일반 화물

다. 안내사항

1.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453-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60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 : 중로1-1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12.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 중로 1-10호선)
3. 사업의 규모
 - 중로1-10호선 B=20~23m, L=1,380m
4. 위 치 : 장수동 380번지 일원
5. 보 상 시 기 : 2017. 2월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장수동 380-12 외 15필지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6. 12. 23. - 2017. 1. 9(18일간)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만수동	1-45 2	도	23	23	-	23	23 * 19/26	인천광역시					
								23 * 7/26	남동구					
2	만수동	2-64	도	84	84	-	84	84	인천광역시					
3	만수동	2-10 2	도	1,885	1,885	-	1,885	1,885	인천광역시					
4	만수동	2-10 3	도	345	345	-	345	345	국(기획재정부)					
5	만수동	2-10 4	임	406	406	-	406	406	인천광역시					
6	만수동	2-10 5	임	2,338	2,338	-	2,338	2,338	인천광역시					
7	만수동	3-95	도	2,503	2,503	-	2,503	2,503	인천광역시					
8	만수동	3-12 0	도	959	959	-	959	959	인천광역시					
9	만수동	5-44 1	도	661	661	-	661	661	인천광역시					
10	만수동	5-53 2	도	42	42	-	42	42	인천광역시					
11	만수동	5-53 3	도	26	26	-	26	26	남동구					
12	만수동	5-53 4	도	44	44	-	44	44	인천광역시					
13	만수동	820- 2	도	1,548	1,548	-	1,548	1,548	국(국토교통부)					
14	만수동	822- 40	도	34	34	-	34	34	국(국토교통부)					
15	장수동	380- 3	도	1,225	1,225	-	1,225	1,225	인천광역시					
16	장수동	380- 4	도	251	251	-	251	251	인천광역시					
17	장수동	380- 12	전	18	-	증)	18	18	박*레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동)				
18	장수동	380- 13	전	42	-	증)	42	42	박*레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동)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9	장수동	380-14	전	38	-	증)	38	38	38	박*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동)			
20	장수동	381-3	도	3,390	3,390	-	3,390	3,390	인천광역시					
21	장수동	381-5	전	44	-	증)	44	44	44	이*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말로***번길-**, 1동***호(만수동,**다세대주택)			
22	장수동	381-6	전	50	-	증)	50	50	50	이*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말로***번길-**, 1동***호(만수동,**다세대주택)			
23	장수동	383-3	전	20	-	증)	20	20	20	오*주	인천광역시서구탁옥로74번길3.***동***호**동,**아파트)	서인천*****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신현동)	근저당권
24	장수동	383-4	도	7	-	증)	7	7	7	구*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번길**-2(**동)			
25	장수동	386-12	도	718	-	증)	30	30	30	남동구				
26	장수동	387-6	전	96	-	증)	96	96	96	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00,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 6단지)			
27	장수동	388-18	전	21	-	증)	21	21	채*춘	인천광역시남동구방축로 501.5동***호(간석동.우아파트)	남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0			정*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금곡로233,***동***호(금곡동,**마을)	근저당권	
28	장수동	388-19	전	89	-	증)	89	89	89	김*년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4동***호(송도동,송도***월드)			
								0	원*명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4동***호(송도동,송도***월드)				
29	장수동	389-5	대	2	-	증)	2	2	2	양*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구분	소재지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30	장수동	389-6	전	94	-	증)	94	94	94	양*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31	장수동	389-7	도	2	-	증)	2	2	2	양*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32	장수동	391-3	도	173	173	-		173	173	인천광역시					
33	장수동	394-1	도	737	737	-		737	737	인천광역시					
34	장수동	394-13	전	41	-	증)	41	41	41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2층(장수동)				
35	장수동	395-4	도	1	1	-		1	1	남동구					
36	장수동	395-6	전	32	-	증)	32	32	32	오*순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2동****호 (송도동,송도*****월드)				
37	장수동	397-2	도	17	17	-	17	17 * 16/30	인천광역시						
								17 * 98/210	남동구						
38	장수동	397-5	도	61	61	-		61	61	인천광역시					
39	장수동	397-12	도	268	268	-		268	268	인천광역시					
40	장수동	397-16	도	2,224	2,224	-		2,224	2224	인천광역시					
41	장수동	398-5	도	3	3	-		3	3	인천광역시					
42	장수동	398-10	도	65	65	-	65	65 * 67/106	인천광역시						
								65 * 273/742	남동구						
43	장수동	411	차	7,834	0.1	-		0.1	0.1	인천광역시					
44	장수동	450-	도	402	357	증)	45	402	402	인천광역시					

구분	소재지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5													
45	장수동	751-16	도	89	89	-		89	89	국(국토교통부)					
46	장수동	751-18	도	197	184	증)	13	197	197	국(국토교통부)					
47	장수동	751-19	도	46	41	증)	5	46	46	국(국토교통부)					
48	장수동	751-21	도	59	51	증)	8	59	59	국(국토교통부)					
49	장수동	751-22	도	2	2	-		2	2	국(국토교통부)					
50	장수동	산14 7-3	임	21	21	-		21	21* 9355. 2/163 64	유*희	*** Bannatyne dr North York, ON M2L 2P7,Canada	김*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능허대로**번길**,*** 동****호 (**동,****아파트)	가등기권	
									21* 1653/ 16364	송*철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				
									21* 3702. 8/163 64	김*정	인천광역시서구솔빛로** ****동****호 (경서동,청라SK****)				
									21* 1653/ 16364	최*훈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번길 ***(송*동)				
51	장수동	산14 8-1	임	859	479	증)	380	859	859	인천광역시					
52	장수동	산14 9-1	임	1,189	661	증)	528	1,189	1189* 430/1 6364	인천광역시					
									1189* 7713/ 16364	남동구					
									1189* 3659/ 16364	임*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구월동)				
53	장수동	산15 1-10	임	945	171	증)	774	945	6186* 6186/ 7131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945*6186/7131	인천광역시					
54	장수동	산151-11	임	965	229	증)	736	965	965*2597/3562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965*965/3562	인천광역시				
55	장수동	산151-12	임	1,875	870	증)	1,005	1,875	1875*1694/3569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1875*1875/3569	인천광역시				
56	장수동	산151-13	임	173	27	감)	-27	-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인천광역시				
57	장수동	산151-14	임	312	24	증)	288	312	312*1298/1610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312*312/1610	인천광역시				
58	장수동	산169-3	도	2,087	285	증)	1,802	2,087	2,087	국(국토교통부)				
59	장수동	산172-1	임	1,976	1,759	증)	217	1,976	1976*5264/7240	이*하	인천 부평구 부개동 ***-2, 3			
									1976*1976/7240	인천광역시				
60	장수동	산173-1	임	429	338	증)	91	429	429*4950/5752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429*	인천광역시				

구분	소재지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802/5 752						
61	장수동	산17 3-2	임	373	306	증)	67	373	373* 4950/ 5752	이*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 5동 ****			
									373* 802/5 752	인천광역시				
62	장수동	산17 3-4	도	1,295	1,221	증)	74	1,295	1,295	국(국토교통부)				
63	장수동	산17 3-5	도	695	91	증)	604	695	695	국(국토교통부)				
64	장수동	산17 4-4	임	95	95	-		95	95	국(국방부)				
65	장수동	산17 4-5	임	335	335	-		335	335	국(국방부)				
66	장수동	산17 4-6	임	527	17	감)	-17	-	-	국(국방부)				
67	장수동	산17 4-8	임	486	486	-		486	486	국(국방부)				
				43,89 3	27,45 2.1	증)	7,219	34,671.1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건설과(☎453-272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
 - 명 칭 : 도시계획사업(도로:중로1-10호선)
- 사업규모
 - B=20~23m, L=1,380m(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도로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6.10.17. ~ 2017.12.31.(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있음-붙임참조」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토지조서(이해관계인 기입)

구 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만수동	1-452	도	23	23	-	2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2	만수동	2-64	도	84	84	-	84	인천광역시					
3	만수동	2-102	도	1,885	1,885	-	1,885	인천광역시					
4	만수동	2-103	도	345	345	-	345	국 (기획재정부)					
5	만수동	2-104	임	406	406	-	406	인천광역시					
6	만수동	2-105	임	2,338	2,338	-	2,338	인천광역시					
7	만수동	3-95	도	2,503	2,503	-	2,503	인천광역시					
8	만수동	3-120	도	959	959	-	959	인천광역시					
9	만수동	5-441	도	661	661	-	661	인천광역시					
10	만수동	5-532	도	42	42	-	42	인천광역시					
11	만수동	5-533	도	26	26	-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12	만수동	5-534	도	44	44	-	44	인천광역시					
13	만수동	820-2	도	1,548	1,548	-	1,548	국 (국토교통부)					
14	만수동	822-40	도	34	34	-	34	국 (국토교통부)					
15	장수동	380-3	도	1,225	1,225	-	1,225	인천광역시					
16	장수동	380-4	도	251	251	-	251	인천광역시					
17	장수동	380-12	전	18	-	증) 18	18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8	장수동	380-13	전	42	-	증) 42	42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9	장수동	380-14	전	38	-	증) 38	38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20	장수동	381-3	도	3,390	3,390	-	3,390	인천광역시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장수동	381-5	전	44	-	증) 44	44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2	장수동	381-6	전	50	-	증) 50	5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3	장수동	383-3	전	20	-	증) 20	20	오○○	인천광역시 서구 심 곡동 302 ○○○	서인천농협 연희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 로353(신현 동)	근저당 지상권	
24	장수동	383-4	도	7	-	증) 7	7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25	장수동	386-12	도	718	-	증) 30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26	장수동	387-6	전	96	-	증) 96	96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				
27	장수동	388-18	전	21	-	증) 21	21	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501, ○○ ○	남인천농업 협동조합(송 도중앙지점)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 334-1 경기도 성 남시 분당 구○○○	근저당 근저당	
28	장수동	388-19	전	89	-	증) 89	89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 ○○				
								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 ○○				
29	장수동	389-5	대	2	-	증) 2	2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농업 협동조합(남 촌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334-1	근저당 지상권	
30	장수동	389-6	전	94	-	증) 94	94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농업 협동조합(남 촌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334-1	근저당 지상권	
31	장수동	389-7	도	2	-	증) 2	2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농업 협동조합(남 촌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 련동334-1	근저당 지상권	
32	장수동	391-3	도	173	173	-	173	인천광역시					
33	장수동	394-1	도	737	737	-	737	인천광역시					
34	장수동	394-13	전	41	-	증) 41	41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	장수동	395-4	도	1	1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36	장수동	395-6	전	32	-	증) 32	32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7	장수동	397-2	도	17	17	-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38	장수동	397-5	도	61	61	-	61	인천광역시					
39	장수동	397-12	도	268	268	-	268	인천광역시					
40	장수동	397-16	도	2,224	2,224	-	2,224	인천광역시					

구 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1	장수동	398-5	도	3	3	-	3	인천광역시					
42	장수동	398-10	도	65	65	-	6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43	장수동	411	차	7,834	0.1	-	0.1	인천광역시					
44	장수동	450-5	도	402	357	증) 45	402	인천광역시					
45	장수동	751-16	도	89	89	-	89	국 (국토교통부)					
46	장수동	751-18	도	197	184	증) 13	197	국 (국토교통부)					
47	장수동	751-19	도	46	41	증) 5	46	국 (국토교통부)					
48	장수동	751-21	도	59	51	증) 8	59	국 (국토교통부)					
49	장수동	751-22	도	2	-	증) 2	2	국 (국토교통부)					
50	장수동	산147-3	임	21	21	-	21	유○○	캐나다국 온태리오 주 토론토시 ○○○	김○○	인천광역시 연 수구 옥련동○ ○○	가등기	
								송○○	인천광역시 동구 창 영동 ○○○				
								김○○	인천 동구 송림동 ○○○				
								최○○	인천광역시 동구 샛 골로 161번길○○○				
51	장수동	산148-1	임	859	479	증) 380	859	인천광역시					
52	장수동	산149-1	임	1,189	661	증) 528	1,1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3번길 ○○○				
53	장수동	산151-10	임	945	171	증) 774	94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인천광역시					

구 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4	장수동	산151-11	임	965	229	증) 736	965	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55	장수동	산151-12	임	1,875	870	증) 1,005	1,875	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56	장수동	산151-13	임	173	27	감) 27	-	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57	장수동	산151-14	임	312	24	증) 288	312	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58	장수동	산169-3	도	2,087	285	증) 1,802	2,087	국 (국토교통부)					
59	장수동	산172-1	임	1,976	1,759	증) 217	1,976	이○○ 인천광역시	인천 부평구 부개 동 ○○○				
60	장수동	산173-1	임	429	338	증) 91	429	이○○ 인천광역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 동 565 우성아파트 ○○○				
61	장수동	산173-2	임	373	306	증) 67	373	이○○ 인천광역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 동 565 우성아파트 ○○○				
62	장수동	산173-4	도	1,295	1,221	증) 74	1,295	국 (국토교통부)					
63	장수동	산173-5	도	695	91	증) 604	695	국 (국토교통부)					
64	장수동	산174-4	임	95	95	-	95	국(국방부)					
65	장수동	산174-5	임	335	335	-	335	국(국방부)					
66	장수동	산174-6	임	527	17	감) 17	-	국(국방부)					
67	장수동	산174-8	임	486	486	-	486	국(국방부)					
				43,893	27,452.1	증) 7,219	34,671.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 - 18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 행 기 간											
	계			1단계(2017~2019)			2단계(2020~2021)			2-2단계(2022년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56	274,512	383,214	13	37,522	31,904	38	128,949	207,211	105	108,041	144,099
도로	126	214,417	283,408	6	18,799	10,681	29	104,263	166,062	91	91,355	106,665
주차장	13	16,769	41,803	-	-	-	4	10,459	26,598	9	6,310	15,205
공원	14	34,310	45,045	6	11,982	14,231	4	13,193	11,743	4	9,135	19,071
광장	1	6,741	6,992	1	6,741	6,992	-	-	-	-	-	-
도서관	1	1,241	3,158	-	-	-	-	-	-	1	1,241	3,158
공공청사	1	1,034	2,808	-	-	-	1	1,034	2,808	-	-	-

2.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 붙임 참조

■ 관계도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도서생략)

남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7~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기타주요내용	총사업 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기 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이후		
									계	시비	구비												
1	도로	10	중3-69	2019~2020	연장 :900, 면적 :10800	7,904	7,904		7,904	3,952	3,952							6,381	1,523				2020
2	도로	11	소1-1	2019~2020	연장 :615, 면적 :6150	2,718	2,718		2,718	1,359	1,359							1,850	868				2020
3	도로	12	소1-2	2019~2020	연장 :168, 면적 :1680	2,927	2,927		2,927	1,463	1,464							2,690	237				2020
4	도로	14	소1-4	2020	연장 :230, 면적 :2300	2,563	2,563							2,563					2,563				2020
5	도로	4	소1-5	2017~2020	연장 :1244, 면적 :12440	12,076	12,076		12,076	6,038	6,038						4,010	1,440	6,101	525			2020
6	도로	5	소1-7	2017~2020	연장 :1440, 면적 :14400	9,998	9,998		9,998	4,999	4,999						5,850		3,675	473			2020
7	도로	6	소1-10	2017~2021	연장 :869, 면적 :8690	7,184	7,184		7,184	3,592	3,592						3,318			3,516	350		2020
8	도로	14	소2-1	2020~2021	연장 :125, 면적 :1000	1,343	1,343		1,343	672	672									1,202	141		2020
9	도로	1	소2-2	2017	연장 :1170, 면적 :9360	1,649	1,649		1,649	825	825						1,649						2020
10	도로	2	소2-3	2017	연장 :140, 면적 :1120	1,326	1,326		1,326	663	663						1,326						2020
11	도로	14	소2-3	2020~2021	연장 :334, 면적 :2672	2,064	2,064		2,064	1,032	1,032									1,800	264		2020
12	도로	14	소2-5	2020~2021	연장 :536, 면적 :4288	7,577	7,577		7,577	3,789	3,789									6,972	605		2020
13	도로	14	소2-6	2020~2021	연장 :305, 면적 :2440	2,373	2,373		2,373	1,187	1,187									2,029	344		2020
14	도로	14	소2-7	2020~2021	연장 :320, 면적 :2560	3,516	3,516		3,516	1,758	1,758									3,155	361		2020
15	도로	14	소2-8	2020~2021	연장 :180, 면적 :1440	1,546	1,546		1,546	773	773									1,343	203		2020
16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334, 면적 :2004	502	502		502		502											502	2022
17	도로	36	소3-29	2022년 이후	연장 :484, 면적 :2904	1,687	1,687		1,687	844	844											1,687	2024
18	도로	36	소2-1	2022년 이후	연장 :140, 면적 :1120	339	339		339		339											339	2026
19	도로	36	소2-1	2022년 이후	연장 :323, 면적 :2584	2,919	2,919		2,919	1,460	1,460											2,919	2026
20	도로	36	소2-2	2022년 이후	연장 :55, 면적 :440	386	386		386		386											386	2026
21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295, 면적 :1770	1,769	1,769		1,769	885	885											1,769	2026
22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98, 면적 :588	127	127		127		127											127	2026
23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120, 면적 :720	1,183	1,183		1,183	592	592											1,183	2026
24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347, 면적 :2082	1,458	1,458		1,458	729	729											1,458	2026

25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148, 면적 :888	979	979		979		979									979	2026
26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167, 면적 :1002	1,307	1,307		1,307	654	654									1,307	2026
27	도로	36	소3-1	2022년 이후	연장 :19, 면적 :114	60	60		60		60									60	2026
28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495, 면적 :2970	2,337	2,337		2,337	1,169	1,169									2,337	2026
29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114, 면적 :684	752	752		752		752									752	2026
30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37, 면적 :222	99	99		99		99									99	2026
31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82, 면적 :492	638	638		638		638									638	2026
32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159, 면적 :954	1,118	1,118		1,118	559	559									1,118	2026
33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45, 면적 :270	186	186		186		186									186	2026
34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78, 면적 :468	413	413		413		413									413	2026
35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62, 면적 :372	324	324		324		324									324	2026
36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49, 면적 :294	317	317		317		317									317	2026
37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50, 면적 :300	379	379		379		379									379	2026
38	도로	36	소3-2	2022년 이후	연장 :276, 면적 :1656	471	471		471		471									471	2026
39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62, 면적 :372	475	475		475		475									475	2026
40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41, 면적 :246	339	339		339		339									339	2026
41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147, 면적 :882	543	543		543		543									543	2026
42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232, 면적 :1392	1,656	1,656		1,656	828	828									1,656	2026
43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66, 면적 :396	215	215		215		215									215	2026
44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89, 면적 :534	371	371		371		371									371	2026
45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43, 면적 :258	139	139		139		139									139	2026
46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128, 면적 :768	1,008	1,008		1,008	504	504									1,008	2026
47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19, 면적 :114	66	66		66		66									66	2026
48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128, 면적 :768	850	850		850		850									850	2026
49	도로	36	소3-3	2022년 이후	연장 :33, 면적 :198	46	46		46		46									46	2026
50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148, 면적 :888	1,175	1,175		1,175	588	588									1,175	2026
51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114, 면적 :684	591	591		591		591									591	2026
52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170, 면적 :1020	957	957		957		957									957	2026
53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98, 면적 :588	817	817		817		817									817	2026

54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109, 면적 :654	618	618		618		618									618	2026
55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558, 면적 :2592	1,088	1,088		1,088	544	544									1,088	2026
56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22, 면적 :132	167	167		167		167									167	2026
57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348, 면적 :2088	1,551	1,551		1,551	776	776									1,551	2026
58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139, 면적 :834	896	896		896		896									896	2026
59	도로	36	소3-4	2022년 이후	연장 :141, 면적 :846	886	886		886		886									886	2026
60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66, 면적 :396	561	561		561		561									561	2026
61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511, 면적 :3066	1,749	1,749		1,749	875	875									1,749	2026
62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192, 면적 :1152	1,442	1,442		1,442	721	721									1,442	2026
63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113, 면적 :678	607	607		607		607									607	2026
64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55, 면적 :330	336	336		336		336									336	2026
65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98, 면적 :588	650	650		650		650									650	2026
66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24, 면적 :144	177	177		177		177									177	2026
67	도로	36	소3-5	2022년 이후	연장 :167, 면적 :1002	1,067	1,067		1,067	534	534									1,067	2026
68	도로	36	소3-6	2022년 이후	연장 :102, 면적 :612	860	860		860		860									860	2026
69	도로	36	소3-6	2022년 이후	연장 :162, 면적 :972	1,035	1,035		1,035	518	518									1,035	2026
70	도로	36	소3-6	2022년 이후	연장 :51, 면적 :306	704	704		704		704									704	2026
71	도로	36	소3-6	2022년 이후	연장 :58, 면적 :348	49	49		49		49									49	2026
72	도로	36	소3-6	2022년 이후	연장 :158, 면적 :948	500	500		500		500									500	2026
73	도로	36	소3-7	2022년 이후	연장 :120, 면적 :720	1,053	1,053		1,053	527	527									1,053	2026
74	도로	7	소3-7	2018~2019	연장 :635, 면적 :3810	3,111	3,111		3,111	1,556	1,556					2,574	537				2026
75	도로	36	소3-7	2022년 이후	연장 :9, 면적 :54	101	101		101		101									101	2026
76	도로	36	소3-7	2022년 이후	연장 :293, 면적 :1758	2,954	2,954		2,954	1,477	1,477									2,954	2026
77	도로	36	소3-8	2022년 이후	연장 :212, 면적 :1272	1,078	1,078		1,078	539	539									1,078	2026
78	도로	36	소3-8	2022년 이후	연장 :65, 면적 :390	56	56		56		56									56	2026
79	도로	36	소3-8	2022년 이후	연장 :88, 면적 :528	107	107		107		107									107	2026
80	도로	36	소3-9	2022년 이후	연장 :148, 면적 :888	126	126		126		126									126	2026
81	도로	36	소3-9	2022년 이후	연장 :115, 면적 :690	643	643		643		643									643	2026
82	도로	36	소3-9	2022년 이후	연장 :45, 면적 :270	165	165		165		165									165	2026

83	도로	36	소3-10	2022년 이후	연장 :56, 면적 :336	351	351		351		351									351	2026
84	도로	36	소3-10	2022년 이후	연장 :60, 면적 :360	180	180		180		180									180	2026
85	도로	36	소3-10	2022년 이후	연장 :86, 면적 :516	743	743		743		743									743	2026
86	도로	36	소3-11	2022년 이후	연장 :60, 면적 :360	313	313		313		313									313	2026
87	도로	36	소3-11	2022년 이후	연장 :70, 면적 :420	662	662		662		662									662	2026
88	도로	36	소3-13	2022년 이후	연장 :47, 면적 :282	262	262		262		262									262	2026
89	도로	36	소3-15	2022년 이후	연장 :99, 면적 :594	665	665		665		665									665	2026
90	도로	36	소3-16	2022년 이후	연장 :139, 면적 :834	654	654		654		654									654	2026
91	도로	36	소3-17	2022년 이후	연장 :10, 면적 :40	66	66		66		66									66	2026
92	도로	36	소3-18	2022년 이후	연장 :10, 면적 :40	55	55		55		55									55	2026
93	도로	36	소2-2	2022년 이후	연장 :200, 면적 :1600	2,020	2,020		2,020	1,010	1,010									2,020	2026
94	도로	29	중2-378	2020	연장 :227.59, 면적 :1596.9	3,241	3,241						3,241				3,241				2020
95	도로	14	소2-1	2020	연장 :80, 면적 :640	272	272		272		272						272				2020
96	도로	14	소2-8	2020	연장 :24, 면적 :192	99	99		99		99						99				2020
97	도로	9	소3-206	2018	연장 :80, 면적 :320	168	168		168		168				168						2020
98	도로	14	소3	2020	연장 :60, 면적 :300	113	113		113		113						113				2020
99	도로	113	소1-1	2022년 이후	연장 :202, 면적 :2020	3,192	3,192						3,192							3,192	2031
100	도로	29	소1-10	2020	연장 :118, 면적 :1180	2,590	2,590						2,590				2,590				2029
101	도로	29	소1-4	2020	연장 :105, 면적 :1050	4,110	4,110						4,110				4,110				2028
102	도로	113	소2-1	2022년 이후	연장 :37, 면적 :296	343	343						343							343	2031
103	도로	3	소2-소래4	2017~2018	연장 :112, 면적 :931	3,300	3,300		3,300		3,300				3,100	200					2031
104	도로	24	소2-소래5	2020~2021	연장 :100, 면적 :834	4,808	4,808		4,808	2,404	2,404						4,400	408			2031
105	도로	24	소2-소래6	2020~2021	연장 :79, 면적 :664	2,138	2,138		2,138	1,069	1,069						1,938	200			2031
106	도로	24	소2-소래7	2020~2021	연장 :204, 면적 :1672	6,180	6,180		6,180	3,090	3,090						5,700	480			2031
107	도로	8	소3-7	2018~2019	연장 :543, 면적 :3258	1,127	1,127	1,014	113		113					668	459				2035
108	도로	24	소3-소래8	2020~2021	연장 :31, 면적 :122	637	637		637	318	319						500	137			2032
109	도로	24	소3-소래9	2020~2021	연장 :67, 면적 :403	2,114	2,114		2,114	1,057	1,057						2,000	114			2032
110	도로	113	소1-소래3	2022년 이후	연장 :14, 면적 :153	352	352		352	176	176									352	2031
111	도로	29	중1-433	2020	연장 :780, 면적 :14040	47,985	47,985						47,985				47,985				2029

112	도로	113	중1-460	2022년 이후	연장 :115, 면적 :2300	4,540	4,540							4,540							4,540	2031
113	도로	113	중1-461	2022년 이후	연장 :158, 면적 :3160	6,620	6,620							6,620							6,620	2031
114	도로	113	중1-462	2022년 이후	연장 :277, 면적 :5540	12,133	12,133							12,133							12,133	2031
115	도로	13	중2-소래1	2019~2020	연장 :107, 면적 :1931	4,794	4,794		4,794	2,397	2,397						4,000	794				2031
116	도로	29	중2-379	2020	연장 :276, 면적 :4140	9,027	9,027							9,027					9,027			2028
117	도로	113	중2-693	2022년 이후	연장 :103, 면적 :1545	2,700	2,700							2,700							2,700	2029
118	도로	29	소1-3	2020	연장 :373, 면적 :2238	10,933	10,933							10,933				10,933				2029
119	도로	29	중3-7	2020	연장 :200, 면적 :2400	3,232	3,232							3,232					3,232			2029
120	도로	113	중2-774	2022년 이후	연장 :352, 면적 :5280	10,903	10,903							10,903							10,903	2031
121	도로	113	중3-417	2022년 이후	연장 :227, 면적 :2837.5	4,601	4,601							4,601							4,601	2029
122	도로	113	중3-418	2022년 이후	연장 :65, 면적 :812.5	1,378	1,378							1,378							1,378	2029
123	도로	113	중2-24	2022년 이후	연장 :30, 면적 :150	21	21							21							21	
124	도로	113	중3-47	2022년 이후	연장 :270, 면적 :2240	378	378							378							378	
125	도로	113	소1-13	2022년 이후	연장 :116, 면적 :232	518	518							518							518	
126	도로	113	중2-692	2022년 이후	연장 :127, 면적 :1143	2,791	2,791							2,791							2,791	
127	주차장	5	공영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640	134	134		134		134										134	2026
128	주차장	5	공영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657	771	771		771		771										771	2026
129	주차장	5	공영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500	582	582		582		582										582	2026
130	주차장	5	공영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500	507	507		507		507										507	2026
131	주차장	5	공영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333	244	244		244		244										244	2026
132	주차장	10	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1533.5	3,748	3,748							3,748							3,748	2031
133	주차장	10	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423.4	802	802							802							802	2028
134	주차장	4	주차장	2020	면적 551	879	879							879					879			2029
135	주차장	1	소래구역	2020~2021	면적 5590	14,935	14,935		14,935	7,467	7,467							14,400	535			2031
136	주차장	1	소래구역	2020~2021	면적 3579	9,584	9,584		9,584	4,792	4,792							9,000	584			2031
137	주차장	10	만수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1496	1,335	1,335		1,335		1,335										1,335	2028
138	주차장	10	주차장	2022년 이후	면적 226.9	7,082	7,082							7,082							7,082	2029
139	주차장	1	소래구역	2020~2021	면적 739	1,200	1,200		1,200	600	600							1,100	100			2031
140	공원	4	박촌공원	2018	면적 3468	291	291		291		291						291					2021

141	공원	5	경신지구공원	2019	면적 1500	1,301	1,301		1,301		1,301						1,301				2026
142	공원	7	도림지구공원	2020	면적 1500	1,699	1,699		1,699		1,699							1,699			2026
143	공원	10	새말공원	2020	면적 4144	636	636		636		636							636			2020
144	공원	11	어린이공원	2022년 이후	면적 2176.8	5,047	5,047							5,047						5,047	2029
145	공원	7	어린이공원	2020	면적 1507.3	5,406	5,406							5,406				5,406			2028
146	공원	11	어린이공원	2022년 이후	면적 5996.8	12,447	12,447							12,447						12,447	2031
147	공원	7	다복마을 소공원	2020	면적 6042.4	4,002	4,002							4,002				4,002			2029
148	공원	11	수현지구	2022년 이후	면적 452	1,188	1,188		1,188		1,188									1,188	2032
149	공원	2	만의골지구	2017	면적 517	308	308		308		308				308						2032
150	공원	3	연락골지구	2017	면적 2073	1,060	1,060		1,060		1,060				1,060						2032
151	공원	11	산저지구	2022년 이후	면적 510	389	389		389		389									389	2032
152	공원	6	소래소공원	2019	면적 4178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2031
153	공원	1	간석로 15번길 컴퓨터 소공원	2017	면적 : 246.3	21	21		21		21				21						2033
154	광장	1	경관광장	2018	면적 6741	6,992	6,992		6,992	3,496	3,496					6,992					2020
155	공공청사	1	공공청사	2020	면적 10344	2,808	2,808							2,808				2,808			2029
156	공공 도서관	1	도서관	2022년 이후	면적 1241.3	3,158	3,158							3,158						3,158	2031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878호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85㎡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85㎡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 40%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고 제 2016 - 104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23 ~ 2017. 01. 06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유통전문 판매업	2014- 0199029	(주)와이비코리아	김*일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21번길 10-4, 1층 (구월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2016.12.16
6. 처분사유 : 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운연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운연어린이공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52), 공원 녹지과(☎032-453-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국지	어린이공원	남동구 운연동 144-12 일원	2,100	증 14	2,114	인고 제2010-249 (2010. 8.3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운연어린이공원	면적변경 당초(2,100m ²) → 변경(2,114m ²) 증(14m ²)	운연어린이공원 조성완료에 따른 운연동 144-12 일원의 도시계획선 지적분할 측량결과 공원면적의 증가

3. 지형도면: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구보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5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8번길 14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21 외 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8-27,- 28,-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 8번길	14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석산로2 48번길1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을건물 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94-12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남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호구포 로594-1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94-12를 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 환로10번 길	5-11	2012.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남 순환로10번길5-1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11을건 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6	2009.11.16	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논현역 로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6를건물번 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 로	159	2014.6.2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 시흥시 방산동의 각각 법정동 명칭를 이용하여 명명함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방 산로15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9을건 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 0번길	40	2009.11.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석정로5 80번길4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0를건물 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82	2009.11.16	은봉로와 청능대로 가운데 위치하여 각 도로명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제명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은청로8 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82을건물 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57	2011.3.24	배가 닿았다는 옛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배려터 로57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7를건물 번호로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7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마달로	24-20	2009.11.16	성마달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6.12.19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성마달 로24-2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4-20을 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 길	21	2016.12.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16-1	2016.12.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12-10	2016.12.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2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4번길	17-5	2016.12.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4번길	17-3	2016.12.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8-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8번 길	14	2016.12.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59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공사완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 가.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나. 명 칭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 나. 면 적 : 79,059.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합 계		79,059.4	100	
주거용지	소계	61,120.1	77.3	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공동주택(1BL)	22,581.4	28.6	
	공동주택(2BL)	38,538.7	48.7	
정비기반 시설용지	도로	11,402.7	14.5	무상귀속
	공원	1,505.8	1.9	무상귀속(2개소)
	녹지	1,905.5	2.4	무상귀속(2개소)
	주차장	1,763.7	2.2	무상귀속
기타용지	종교용지	1,361.6	1.7	

(2)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구 분		단 위	1 BL	2 BL	계	
공 동 주 택	대지면적	m²	22,581.4	38,538.7	61,120.1	
	건축면적	m²	3,373.76	5,438.70	8,812.46	
	지상연면적	m²	52,437.35	87,170.50	139,607.85	
	건폐율	%	14.94	14.11	14.42	30%이하
	용적률	%	232.11	226.10	228.32	250%이하
	최고높이	층	26	28	28	
	주차대수	대	636(지하620)	920(지하853)	1,556(지하1,473)	
	조경면적	m²	9,466.47	16,513.15	25,979.62	

나. 주택의 규모

구 분		1BL	2BL	소계(세대)	비율(%)	비 고
임대	39m²	138	-	138		
	59m²	178	-	178		
	소계	316	-	316	22.9%	
분양	59m²	86	88	174		
	74m²	-	104	104		
	84m²	185	600	785		
	소계	271	792	1,063	77.1%	
총 계		587	792	1,379		

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도로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448	15-18	집산도로	257	대1-14	중2-377	
소로	1	229	10.5	국지도로	140	소3-64	중2377	
대로	1	14	35-38	주간선도로	12,450	서해안로	중봉로	
중로	2	377	15	집산도로	339	소3-52	대1-13	
소로	2	56	8-9	국지도로	251	소3-51	대1-14	
소로	2	227	8.9-9	국지도로	115	소3-64	대1-14	

(2)주차장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비고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동 224-80번지 일원	1,763.7	

(3)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비고
간석소공원-1	소공원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88.6	
간석소공원-2	소공원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17.2	

(4)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비고
간석녹지-1	경관녹지	간석동 911-1번지 일원	655.6	
간석녹지-2	경관녹지	간석동 912-4번지 일원	1,249.9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 사업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운연·수산·만수동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변경 없음) : 도로(중로1-325, 1-326, 2-613호선)
- 명 칭(변경 없음)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B=20m, L=1,670m
 - 중로 1-326호선 : B=20m, L= 900m
 - 중로 2-613호선 : B=15m, L= 300m
- 면 적(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A=60,201m²
 - 중로 1-326호선 : A=41,874m²
 - 중로 2-613호선 : A=5,715.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의공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노선명	기 정	변 경	비 고
중로1-325호선	2010.05.20~2016.06.30	변경없음	사업완료
중로1-326호선	2010.05.20~2016.12.31	2010.05.20.~2018.12.31	-
중로2-613호선	2010.05.20.~2016.06.30	변경없음	사업완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6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85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17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1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85	2009. 11.16	중국으로 가는 사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6. 12.2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 개로385번 기초 구간에 위치하 여 385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 번길	46	2009. 11.16	석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 하는 도로	2016. 12.23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촌 로46번길46번 기초 구간에 위 치하여 46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17	2016.12.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53-1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30-25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30-27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30-29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30-31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30-33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53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2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49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45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51	2016.12.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8-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8번길	12	2016.12.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8-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8번길	10	2016.12.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73	2016.12.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4-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16	2016.12.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63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고시

제2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12.21)에서의결, 확정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1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640,180,668	100.00%	564,395,810	100.00%	75,784,858	13.43%
일반회계	603,838,635	94.32%	536,864,073	95.12%	66,974,562	12.48%
특별회계	36,342,033	5.68%	27,531,737	4.88%	8,810,296	32.00%
기타특별회계	36,342,033	5.68%	27,531,737	4.88%	8,810,296	32.00%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1,150,000	1.74%	4,700,000	0.83%	6,450,000	137.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542,661	1.65%	10,307,853	1.83%	234,808	2.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13,052	0.14%	741,829	0.13%	171,223	23.0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213	0.04%	207,042	0.04%	33,171	16.02%
기반시설특별회계	50,107	0.01%	36,000	0.01%	14,107	39.19%
주차장특별회계	13,446,000	2.10%	11,539,013	2.04%	1,906,987	16.53%

세 입 총 괄 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단위:천 원)

장·관·항·목		예 산 액	구 성 비	전년도 예산액	구 성 비	비 교 증 감	증 감 륜
총 계		603,838,635	100 %	536,864,073	100 %	66,974,562	12.48%
100 지방세수입		113,663,437	18.82 %	107,355,000	20.00 %	6,308,437	5.88%
110 지방세		113,663,437	18.82 %	107,355,000	20.00 %	6,308,437	5.88%
111 보통세		111,463,437	18.46 %	105,185,000	19.59 %	6,278,437	5.97%
	111-02 등 록 면 허 세	14,315,437	2.37 %	14,836,000	2.76 %	△520,563	△3.51%
	111-03 주민세	11,648,000	1.93 %	9,849,000	1.83 %	1,799,000	18.27%
	111-04 재산세	85,500,000	14.16 %	80,500,000	14.99 %	5,000,000	6.21%
113 지난년도수입		2,200,000	0.36 %	2,170,000	0.40 %	30,000	1.38%
	113-01 지 난 년 도 수입	2,200,000	0.36 %	2,170,000	0.40 %	30,000	1.38%
200 세외수입		44,009,648	7.29 %	39,199,781	7.30 %	4,809,867	12.27%
210 경상적세외수입		34,894,539	5.78 %	32,362,344	6.03 %	2,532,195	7.82%
211 재산임대수입		69,000	0.01 %	60,300	0.01 %	8,700	14.43%
	211-01 국 유 재 산 임대료	10,000	0.00 %	10,000	0.00 %	0	0.00%
	211-02 공 유 재 산 임대료	59,000	0.01 %	50,300	0.01 %	8,700	17.30%
212 사용료수입		3,062,602	0.51 %	3,129,793	0.58 %	△67,191	△2.15%
	212-01 도 로 사 용 료	1,520,000	0.25 %	1,330,000	0.25 %	190,000	14.29%
	212-08 기 타 사 용 료	1,542,602	0.26 %	1,755,193	0.33 %	△212,591	△12.11%
213 수수료수입		11,973,400	1.98 %	11,164,160	2.08 %	809,240	7.25%
	213-01 증지수입	2,185,360	0.36 %	2,221,800	0.41 %	△36,440	△1.64%
	213-02 쓰 레 기 처 리 불 투 판 매수입	7,586,000	1.26 %	6,534,000	1.22 %	1,052,000	16.10%
	213-04 기 타 수 수 료	2,202,040	0.36 %	2,408,360	0.45 %	△206,320	△8.57%
214 사업수입		2,968,048	0.49 %	2,792,800	0.52 %	175,248	6.27%
	214-08 의 료 사 업 수입	278,400	0.05 %	267,000	0.05 %	11,400	4.27%
	214-09 기 타 사 업 수입	2,689,648	0.45 %	2,525,800	0.47 %	163,848	6.49%

	215	징수교부금수입	15,053,989	2.49 %	14,232,791	2.65 %	821,198	5.77%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5,053,989	2.49 %	14,232,791	2.65 %	821,198	5.77%
	216	이자수입	1,767,500	0.29 %	982,500	0.18 %	785,000	79.9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755,000	0.29 %	970,000	0.18 %	785,000	80.93%
	216-06	기타이자수입	12,500	0.00 %	12,500	0.00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9,115,109	1.51 %	6,837,437	1.27 %	2,277,672	33.31%
	222	부담금	507,680	0.08 %	507,200	0.09 %	480	0.09%
	222-02	일반부담금	507,680	0.08 %	507,200	0.09 %	480	0.09%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1,921,200	0.32 %	1,765,521	0.33 %	155,679	8.82%
	223-01	과징금	226,500	0.04 %	450,500	0.08 %	△224,000	△49.72%
	223-02	이행강제금	220,000	0.04 %	0	0.00 %	220,000	순증
	223-03	변상금	70,150	0.01 %	72,571	0.01 %	△2,421	△3.34%
	223-04	위약금	3,000	0.00 %	0	0.00 %	3,000	순증
	223-05	과태료	1,401,550	0.23 %	1,242,450	0.23 %	159,100	12.81%
	224	기타수입	4,136,229	0.68 %	2,676,994	0.50 %	1,459,235	54.51%
	224-01	불용품매각대	10,000	0.00 %	10,000	0.00 %	0	0.00%
	224-06	그외수입	4,126,229	0.68 %	2,666,994	0.50 %	1,459,235	54.71%
	225	지난연도수입	2,550,000	0.42 %	1,887,722	0.35 %	662,278	35.08%
	225-01	지난연도수입	2,550,000	0.42 %	1,887,722	0.35 %	662,278	35.08%
	300	지방교부세	5,000,000	0.83 %	3,000,000	0.56 %	2,000,000	66.67%
	310	지방교부세	5,000,000	0.83 %	3,000,000	0.56 %	2,000,000	66.67%
	311	지방교부세	5,000,000	0.83 %	3,000,000	0.56 %	2,000,000	66.67%
	311-03	부동산교부세	5,000,000	0.83 %	3,000,000	0.56 %	2,000,000	66.67%
	400	조정교부금등	73,500,000	12.17 %	50,000,000	9.31 %	23,500,000	47.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73,500,000	12.17 %	50,000,000	9.31 %	23,500,000	47.0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73,500,000	12.17 %	50,000,000	9.31 %	23,500,000	47.00%
	411-01	자치구조정교부금	73,500,000	12.17 %	50,000,000	9.31 %	23,500,000	47.00%

500	보조금	321,665,550	53.27 %	306,309,292	57.06 %	15,356,258	5.01%
510	국고보조금등	231,810,440	38.39 %	214,745,704	40.00 %	17,064,736	7.95%
511	국고보조금등	231,810,440	38.39 %	214,745,704	40.00 %	17,064,736	7.95%
511-01	국 고 보 조 금	216,968,267	35.93 %	201,697,308	37.57 %	15,270,959	7.57%
511-02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보조금	4,491,609	0.74 %	4,864,396	0.91 %	△372,787	△7.66%
511-03	기금	10,350,564	1.71 %	8,184,000	1.52 %	2,166,564	26.47%
520	시·도비보조금등	89,855,110	14.88 %	91,563,588	17.06 %	△1,708,478	△1.87%
521	시·도비보조금등	89,855,110	14.88 %	91,563,588	17.06 %	△1,708,478	△1.87%
521-01	시·도 비 보조금등	89,855,110	14.88 %	91,563,588	17.06 %	△1,708,478	△1.8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000,000	7.62 %	31,000,000	5.77 %	15,000,000	48.39%
710	보전수입등	46,000,000	7.62 %	31,000,000	5.77 %	15,000,000	48.39%
711	잉여금	43,000,000	7.12 %	28,000,000	5.22 %	15,000,000	53.57%
711-01	순 세 계 잉 여금	43,000,000	7.12 %	28,000,000	5.22 %	15,000,000	53.57%
712	전년도이월금	3,000,000	0.50 %	3,000,000	0.56 %	0	0.00%
712-01	국 고 보 조 금 사 용 잔 액	1,500,000	0.25 %	1,500,000	0.28 %	0	0.00%
712-02	시·도 비 보 조 금 사 용잔액	1,500,000	0.25 %	1,500,000	0.28 %	0	0.00%

세 출 총 괄 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3,838,635	100 %	536,864,073	100 %	66,974,562	12.48 %
010 일반공공행정		34,976,111	5.79 %	32,517,540	6.06 %	2,458,571	7.56 %
	011 입법및선거관리	1,428,832	0.24 %	1,321,973	0.25 %	106,859	8.08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1,839,857	1.96 %	11,923,903	2.22 %	△84,046	△0.70 %
	016 일반행정	21,707,422	3.59 %	19,271,664	3.59 %	2,435,758	12.64 %
020 공공질서및안전		4,481,145	0.74 %	3,753,227	0.70 %	727,918	19.39 %
	025 재난방재·민방위	4,481,145	0.74 %	3,753,227	0.70 %	727,918	19.39 %
050 교육		9,238,810	1.53 %	7,077,490	1.32 %	2,161,320	30.54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8,913,854	1.48 %	6,772,148	1.26 %	2,141,706	31.63 %
	053 평생·직업교육	324,956	0.05 %	305,342	0.06 %	19,614	6.42 %
060 문화및관광		10,393,075	1.72 %	12,247,071	2.28 %	△1,853,996	△15.14 %
	061 문화예술	2,270,942	0.38 %	1,980,954	0.37 %	289,988	14.64 %
	062 관광	534,170	0.09 %	502,950	0.09 %	31,220	6.21 %
	063 체육	7,481,903	1.24 %	9,664,359	1.80 %	△2,182,456	△22.58 %
	064 문화재	106,060	0.02 %	98,808	0.02 %	7,252	7.34 %
070 환경보호		24,037,489	3.98 %	19,097,935	3.56 %	4,939,554	25.86 %
	071 상하수도·수질	240,442	0.04 %	243,401	0.05 %	△2,959	△1.22 %
	072 폐기물	22,962,710	3.80 %	18,075,025	3.37 %	4,887,685	27.04 %
	073 대기	470,949	0.08 %	419,097	0.08 %	51,852	12.37 %
	074 자연	12,000	0.00 %	6,700	0.00 %	5,300	79.10 %
	075 해양	351,388	0.06 %	353,712	0.07 %	△2,324	△0.66 %
080 사회복지		345,139,202	57.16 %	316,497,662	58.95 %	28,641,540	9.05 %
	081 기초생활보장	75,521,572	12.51 %	68,859,584	12.83 %	6,661,988	9.67 %
	082 취약계층지원	44,691,293	7.40 %	38,142,022	7.10 %	6,549,271	17.17 %
	084 보육·가족및여성	119,524,926	19.79 %	109,027,409	20.31 %	10,497,517	9.63 %
	085 노인·청소년	98,944,391	16.39 %	93,741,346	17.46 %	5,203,045	5.55 %

	086	노동	2,076,769	0.34 %	2,345,025	0.44 %	△268,256	△11.44 %
	087	보훈	3,583,770	0.59 %	3,519,050	0.66 %	64,720	1.84 %
	089	사회복지일반	796,481	0.13 %	863,226	0.16 %	△66,745	△7.73 %
	090	보건	17,199,503	2.85 %	14,522,359	2.71 %	2,677,144	18.43 %
	091	보건의료	16,607,825	2.75 %	13,939,453	2.60 %	2,668,372	19.14 %
	093	식품의약품안전	591,678	0.10 %	582,906	0.11 %	8,772	1.50 %
	100	농림해양수산	2,447,627	0.41 %	3,350,135	0.62 %	△902,508	△26.94 %
	101	농업·농촌	1,567,648	0.26 %	1,963,455	0.37 %	△395,807	△20.16 %
	102	임업·산촌	783,411	0.13 %	1,025,354	0.19 %	△241,943	△23.60 %
	103	해양수산·어촌	96,568	0.02 %	361,326	0.07 %	△264,758	△73.27 %
	110	산업·중소기업	2,838,518	0.47 %	2,925,189	0.54 %	△86,671	△2.96 %
	114	산업진흥·고도화	1,955,990	0.32 %	2,052,151	0.38 %	△96,161	△4.69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847,380	0.14 %	329,020	0.06 %	518,360	157.55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5,148	0.01 %	44,018	0.01 %	△8,870	△20.15 %
	120	수송및교통	8,468,725	1.40 %	15,185,728	2.83 %	△6,717,003	△44.23 %
	121	도로	7,068,924	1.17 %	14,228,821	2.65 %	△7,159,897	△50.32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399,801	0.23 %	956,907	0.18 %	442,894	46.28 %
	140	국토및지역개발	35,070,558	5.81 %	23,508,360	4.38 %	11,562,198	49.18 %
	141	수자원	1,159,304	0.19 %	832,136	0.15 %	327,168	39.32 %
	142	지역및도시	31,341,612	5.19 %	18,372,253	3.42 %	12,969,359	70.59 %
	143	산업단지	2,569,642	0.43 %	4,303,971	0.80 %	△1,734,329	△40.30 %
	160	예비비	24,690,206	4.09 %	3,300,832	0.61 %	21,389,374	648.00 %
	161	예비비	24,690,206	4.09 %	3,300,832	0.61 %	21,389,374	648.00 %
	900	기타	84,857,666	14.05 %	82,880,545	15.44 %	1,977,121	2.39 %
	901	기타	84,857,666	14.05 %	82,880,545	15.44 %	1,977,121	2.39 %

세 출 총 괄 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 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총 계			603,838,635	100%	536,864,073	100 %	66,974,562	12.48%
100 인건비			72,765,790	12.05%	70,843,203	13.20 %	1,922,587	2.71%
	101 인건비		72,765,790	12.05%	70,843,203	13.20 %	1,922,587	2.71%
		101-01 보수	47,212,651	7.82%	46,877,492	8.73 %	335,159	0.71%
		101-02 기타직보수	3,412,875	0.57%	3,544,794	0.66 %	△131,919	△3.72%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957,661	2.48%	14,615,810	2.72 %	341,851	2.34%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82,603	1.19%	5,805,107	1.08 %	1,377,496	23.73%
200 물건비			28,928,279	4.79%	27,092,710	5.05 %	1,835,569	6.78%
	201 일반운영비		20,930,555	3.47%	19,198,236	3.58 %	1,732,319	9.02%
		201-01 사무관리비	7,967,868	1.32%	6,319,173	1.18 %	1,648,695	26.09%
		201-02 공공운영비	9,990,020	1.65%	9,703,052	1.81 %	286,968	2.96%
		201-03 행사운영비	1,153,767	0.19%	1,230,211	0.23 %	△76,444	△6.21%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818,900	0.30%	1,945,800	0.36 %	△126,900	△6.52%
202 여비		2,076,820	0.34%	1,919,540	0.36 %	157,280	8.19%	
		202-01 국내여비	1,495,620	0.25%	1,424,840	0.27 %	70,780	4.97%
		202-02 월액여비	25,200	0.00%	25,200	0.00 %	0	0.00%
		202-03 국외업무여비	65,000	0.01%	65,000	0.01 %	0	0.00%
		202-04 국제화여비	291,000	0.05%	264,500	0.05 %	26,500	10.02%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200,000	0.03%	140,000	0.03 %	60,000	42.86%
203 업무추진비		761,200	0.13%	749,145	0.14 %	12,055	1.61%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700	0.04%	252,000	0.05 %	△1,300	△0.52%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600	0.01%	48,695	0.01 %	△95	△0.2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6,500	0.04%	247,450	0.05 %	△950	△0.38%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5,400	0.04%	201,000	0.04 %	14,400	7.16%
204 직무수행경비		2,334,916	0.39%	2,319,748	0.43 %	15,168	0.65%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5,400	0.02%	125,400	0.02 %	0	0.00%
		204-02 직급보조비	1,737,676	0.29%	1,736,188	0.32 %	1,488	0.09%
		204-03 특정업무경비	471,840	0.08%	458,160	0.09 %	13,680	2.99%

205	의회비	855,784	0.14%	848,006	0.16 %	7,778	0.92%
	205-01 의정활동비	211,200	0.03%	211,200	0.04 %	0	0.00%
	205-02 월정수당	403,200	0.07%	391,488	0.07 %	11,712	2.99%
	205-03 의원국내여비	10,000	0.00%	14,040	0.00 %	△4,040	△28.77%
	205-04 의원국외여비	40,000	0.01%	41,600	0.01 %	△1,600	△3.85%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83,800	0.01%	83,800	0.02 %	0	0.00%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0,400	0.01%	70,400	0.01 %	0	0.00%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000	0.00%	5,200	0.00 %	800	15.38%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8,144	0.00%	17,617	0.00 %	527	2.99%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040	0.00%	12,661	0.00 %	379	2.99%
206	재료비	1,770,636	0.29%	1,712,726	0.32 %	57,910	3.38%
	206-01 재료비	1,770,636	0.29%	1,712,726	0.32 %	57,910	3.38%
207	연구개발비	198,368	0.03%	345,309	0.06 %	△146,941	△42.55%
	207-01 연구용역비	42,400	0.01%	272,400	0.05 %	△230,000	△84.43%
	207-02 전산개발비	155,968	0.03%	72,909	0.01 %	83,059	113.92%
300	경상이전	418,195,768	69.26%	380,432,428	70.86 %	37,763,340	9.93%
301	일반보상금	187,398,738	31.03%	172,136,563	32.06 %	15,262,175	8.87%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78,679,600	29.59%	165,509,878	30.83 %	13,169,722	7.96%
	301-02 장학금및학자금	200,000	0.03%	196,000	0.04 %	4,000	2.04%
	301-04 자율방범대실비지원	67,000	0.01%	66,500	0.01 %	500	0.75%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2,377,810	0.39%	2,339,360	0.44 %	38,450	1.64%
	301-06 민간인국외여비	3,200	0.00%	0	0.00 %	3,200	순증
	301-07 외빈초청여비	7,000	0.00%	7,000	0.00 %	0	0.00%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93,260	0.10%	536,562	0.10 %	56,698	10.57%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39,594	0.07%	428,568	0.08 %	11,026	2.57%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 상금	915,070	0.15%	887,197	0.17 %	27,873	3.14%
	301-11 기타보상금	4,116,204	0.68%	2,165,498	0.40 %	1,950,706	90.08%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55,100	0.01%	55,500	0.01 %	△400	△0.72%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55,100	0.01%	55,500	0.01 %	△400	△0.72%
303	포상금	2,931,999	0.49%	3,124,848	0.58 %	△192,849	△6.17%
	303-01 포상금	96,900	0.02%	108,200	0.02 %	△11,300	△10.44%
	303-02 성과상여금	2,835,099	0.47%	3,016,648	0.56 %	△181,549	△6.02%

304	연금부담금등	10,769,685	1.78%	8,885,079	1.65 %	1,884,606	21.21%
	304-01 연금부담금	8,996,260	1.49%	7,211,529	1.34 %	1,784,731	24.75%
	304-02 국민건강보험금	1,747,025	0.29%	1,647,150	0.31 %	99,875	6.06%
	304-03 의원상해부담금	26,400	0.00%	26,400	0.00 %	0	0.00%
305	배상금등	130,000	0.02%	130,000	0.02 %	0	0.00%
	305-01 배상금등	130,000	0.02%	130,000	0.02 %	0	0.00%
306	출연금	316,932	0.05%	115,993	0.02 %	200,939	173.23%
	306-01 출연금	316,932	0.05%	115,993	0.02 %	200,939	173.23%
307	민간이전	193,493,710	32.04 %	176,475,912	32.87 %	17,017,798	9.64%
	307-01 의료및구료비	12,894,704	2.14%	11,363,963	2.12 %	1,530,741	13.4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62,956	0.49%	2,909,699	0.54 %	53,257	1.83%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6,698	0.05%	270,390	0.05 %	36,308	13.43%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87,200	0.10%	736,000	0.14 %	△148,800	△20.22%
	307-05 민간위탁금	40,321,156	6.68%	36,442,528	6.79 %	3,878,628	10.64%
	307-06 보험금	19,770	0.00%	19,710	0.00 %	60	0.30%
	307-07 연금지급금	223,616	0.04%	212,587	0.04 %	11,029	5.19%
	307-08 이차보전금	200,000	0.03%	100,000	0.02 %	100,000	100.00%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932,752	2.31%	12,725,918	2.37 %	1,206,834	9.48%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2,044,858	20.21 %	111,695,117	20.81 %	10,349,741	9.27%
308	자치단체등이전	23,098,853	3.83%	19,337,304	3.60 %	3,761,549	19.45%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114,885	0.02%	0	0.00 %	114,885	순증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8,596,307	1.42%	6,464,601	1.20 %	2,131,706	32.98%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4,386,041	2.38%	12,869,463	2.40 %	1,516,578	11.78%
	308-11 기타부담금	1,620	0.00%	3,240	0.00 %	△1,620	△50.00%
309	전출금	751	0.00%	157,729	0.03 %	△156,978	△99.52%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751	0.00%	157,729	0.03 %	△156,978	△99.52%
400	자본지출	53,561,296	8.87%	49,380,626	9.20 %	4,180,670	8.47%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74,884	7.46%	42,580,794	7.93 %	2,494,090	5.86%
	401-01 시설비	44,905,602	7.44%	42,390,916	7.90 %	2,514,686	5.93%
	401-02 감리비	6,130	0.00%	0	0.00 %	6,130	순증
	401-03 시설부대비	163,152	0.03%	189,878	0.04 %	△26,726	△14.08%

402	민간자본이전	2,589,659	0.43%	2,795,477	0.52 %	△205,818	△7.36%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재원)	874,050	0.14%	724,323	0.13 %	149,727	20.67%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	1,635,609	0.27%	1,991,154	0.37 %	△355,545	△17.86%
	402-03 민간대행사업비	80,000	0.01%	80,000	0.01 %	0	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26,736	0.27%	1,759,844	0.33 %	△133,108	△7.56%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대행사업비	1,505,436	0.25%	1,508,916	0.28 %	△3,480	△0.23%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 조	121,300	0.02%	250,928	0.05 %	△129,628	△51.66%
405	자산취득비	4,270,017	0.71%	2,244,511	0.42 %	2,025,506	90.24%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968,987	0.66%	2,052,511	0.38 %	1,916,476	93.37%
	405-02 도서구입비	301,030	0.05%	192,000	0.04 %	109,030	56.79%
500	융자및출자	600,000	0.10%	0	0.00 %	600,000	순증
502	출자금	600,000	0.10%	0	0.00 %	600,000	순증
	502-01 출자금	600,000	0.10%	0	0.00 %	600,000	순증
700	내부거래	2,089,496	0.35%	2,556,474	0.48 %	△466,978	△18.27%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4,168	0.00%	21,709	0.00 %	2,459	11.33%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4,168	0.00%	21,709	0.00 %	2,459	11.33%
702	기금전출금	1,243,324	0.21%	1,694,847	0.32 %	△451,523	△26.64%
	702-01 기금전출금	1,243,324	0.21%	1,694,847	0.32 %	△451,523	△26.64%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822,004	0.14%	839,918	0.16 %	△17,914	△2.13%
	705-01 예수금원금상환	700,000	0.12%	700,000	0.13 %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122,004	0.02%	139,918	0.03 %	△17,914	△12.80%
800	예비비및기타	27,698,006	4.59%	6,308,632	1.18 %	21,389,374	339.05%
801	예비비	24,690,206	4.09%	3,300,832	0.61 %	21,389,374	648.00%
	801-01 일반예비비	6,038,386	1.00%	3,000,832	0.56 %	3,037,554	101.22%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200,787	2.35%	300,000	0.06 %	13,900,787	4633.60 %
	801-03 내부유보금	4,451,033	0.74%	0	0.00 %	4,451,033	순증
802	반환금기타	3,007,800	0.50%	3,007,800	0.56 %	0	0.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500,000	0.25%	1,500,000	0.28 %	0	0.00%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000	0.25%	1,500,000	0.28 %	0	0.00%
	802-03 과오납금등	7,800	0.00%	7,800	0.00 %	0	0.00%

세 입 총 괄 표

2017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감	
			구성비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36,342,033	100 %	27,531,737	100 %	8,810,296	32.00%
200	세외수입	6,196,800	17.05 %	5,579,902	20.27 %	616,898	11.06%
210	경상적세외수입	2,809,800	7.73 %	2,659,902	9.66 %	149,898	5.64%
214	사업수입	1,550,000	4.27 %	1,584,000	5.75 %	△34,000	△2.15%
	214-02 주차요금수입	1,550,000	4.27 %	1,584,000	5.75 %	△34,000	△2.15%
215	징수교부금수입	700,000	1.93 %	616,000	2.24 %	84,000	13.64%
	215-01 징수교부금수입	700,000	1.93 %	616,000	2.24 %	84,000	13.64%
216	이자수입	559,800	1.54 %	459,902	1.67 %	99,898	21.7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59,800	1.54 %	459,902	1.67 %	99,898	21.72%
220	임시적세외수입	3,387,000	9.32 %	2,920,000	10.61 %	467,000	15.99%
222	부담금	28,000	0.08 %	28,000	0.10 %	0	0.00%
	222-02 일반부담금	28,000	0.08 %	28,000	0.10 %	0	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000,000	5.50 %	1,600,000	5.81 %	400,000	25.00%
	223-05 과태료	2,000,000	5.50 %	1,600,000	5.81 %	400,000	25.00%
224	기타수입	152,000	0.42 %	285,000	1.04 %	△133,000	△46.67%
	224-06 그외수입	152,000	0.42 %	285,000	1.04 %	△133,000	△46.67%
225	지난연도수입	1,207,000	3.32 %	1,007,000	3.66 %	200,000	19.86%
	225-01 지난연도수입	1,207,000	3.32 %	1,007,000	3.66 %	200,000	19.86%
500	보조금	2,907,584	8.00 %	2,659,820	9.66 %	247,764	9.32%
510	국고보조금등	1,032,067	2.84 %	1,519,136	5.52 %	△487,069	△32.06%
511	국고보조금등	1,032,067	2.84 %	1,519,136	5.52 %	△487,069	△32.06%
	511-01 국고보조금	660,067	1.82 %	519,136	1.89 %	140,931	27.15%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2,000	1.02 %	1,000,000	3.63 %	△628,000	△62.80%

	520	시·도비보조금등	1,875,517	5.16 %	1,140,684	4.14 %	734,833	64.42%
	521	시·도비보조금등	1,875,517	5.16 %	1,140,684	4.14 %	734,833	64.42%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875,517	5.16 %	1,140,684	4.14 %	734,833	64.4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237,649	74.95 %	19,292,015	70.07 %	7,945,634	41.19%
	710	보전수입등	27,213,481	74.88 %	19,270,306	69.99 %	7,943,175	41.22%
	711	잉여금	27,192,981	74.83 %	19,249,806	69.92 %	7,943,175	41.26%
		711-01 순세계잉여금	27,192,981	74.83 %	19,249,806	69.92 %	7,943,175	41.26%
	712	전년도이월금	20,000	0.06 %	20,000	0.07 %	0	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15,000	0.04 %	15,000	0.05 %	0	0.00%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	0.01 %	5,000	0.02 %	0	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500	0.00 %	500	0.00 %	0	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500	0.00 %	500	0.00 %	0	0.00%
	720	내부거래	24,168	0.07 %	21,709	0.08 %	2,459	11.33%
	721	전입금	24,168	0.07 %	21,709	0.08 %	2,459	11.33%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4,168	0.07 %	21,709	0.08 %	2,459	11.33%

세 출 총 괄 표

2017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 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전년도 예산액	구 성 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6,342,033	100.00 %	27,531,737	100.00 %	8,810,296	32.00 %
010 일반공공행정		53,300	0.15 %	60,300	0.22 %	△7,000	△11.61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53,300	0.15 %	60,300	0.22 %	△7,000	△11.61 %
070 환경보호		10,542,661	29.01 %	10,307,853	37.44 %	234,808	2.28 %
	072 폐기물	10,542,661	29.01 %	10,307,853	37.44 %	234,808	2.28 %
080 사회복지		738,500	2.03 %	569,820	2.07 %	168,680	29.60 %
	081 기초생활보장	738,500	2.03 %	569,820	2.07 %	168,680	29.60 %
120 수송및교통		13,252,624	36.47 %	11,356,184	41.25 %	1,896,440	16.70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3,252,624	36.47 %	11,356,184	41.25 %	1,896,440	16.70 %
140 국토및지역개발		11,440,320	31.48 %	4,943,042	17.95 %	6,497,278	131.44 %
	141 수자원	240,213	0.66 %	207,042	0.75 %	33,171	16.02 %
	142 지역및도시	11,200,107	30.82 %	4,736,000	17.20 %	6,464,107	136.49 %
900 기타		314,628	0.87 %	294,538	1.07 %	20,090	6.82 %
	901 기타	314,628	0.87 %	294,538	1.07 %	20,090	6.82 %

세 출 총 괄 표

2017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전년도예산액	구 성 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6,342,033	100.00%	27,531,737	100.00 %	8,810,296	32.00%
100	인건비	314,628	0.87%	339,742	1.23 %	△25,114	△7.39%
101	인건비	314,628	0.87%	339,742	1.23 %	△25,114	△7.39%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14,628	0.87%	290,538	1.06 %	24,090	8.29%
200	물건비	924,308	2.54%	882,508	3.21 %	41,800	4.74%
201	일반운영비	910,308	2.50%	872,188	3.17 %	38,120	4.37%
	201-01 사무관리비	231,648	0.64%	239,048	0.87 %	△7,400	△3.10%
	201-02 공공운영비	678,660	1.87%	633,140	2.30 %	45,520	7.19%
202	여비	14,000	0.04%	10,320	0.04 %	3,680	35.66%
	202-01 국내여비	14,000	0.04%	10,320	0.04 %	3,680	35.66%
300	경상이전	3,501,257	9.63%	3,284,446	11.93 %	216,811	6.60%
301	일반보상금	724,919	1.99%	564,220	2.05 %	160,699	28.48%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15,000	1.97%	550,000	2.00 %	165,000	30.00%
	301-08 사회복지비용보상금	8,919	0.02%	13,220	0.05 %	△4,301	△32.53%
	301-11 기타보상금	1,000	0.00%	1,000	0.00 %	0	0.00%
303	포상금	10,000	0.03%	10,000	0.04 %	0	0.00%
	303-01 포상금	10,000	0.03%	10,000	0.04 %	0	0.00%
305	배상금등	4,000	0.01%	4,000	0.01 %	0	0.00%
	305-01 배상금등	4,000	0.01%	4,000	0.01 %	0	0.00%
307	민간이전	624,000	1.72%	304,000	1.10 %	320,000	105.26%
	307-05 민간위탁금	624,000	1.72%	304,000	1.10 %	320,000	105.26%
308	자치단체등이전	2,138,338	5.88%	2,402,226	8.73 %	△263,888	△10.99%
	308-10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138,338	5.88%	2,402,226	8.73 %	△263,888	△10.99%

400	자본지출	5,209,649	14.34%	7,327,330	26.61 %	△2,117,681	△28.9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39,148	13.32%	7,072,004	25.69 %	△2,232,856	△31.57%
	401-01 시설비	4,823,320	13.27%	7,040,518	25.57 %	△2,217,198	△31.49%
	401-03 시설부대비	15,828	0.04%	31,486	0.11 %	△15,658	△49.73%
402	민간자본이전	30,000	0.08%	30,000	0.11 %	0	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0,000	0.08%	30,000	0.11 %	0	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3,701	0.51%	220,826	0.80 %	△37,125	△16.81%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대행사업비	183,701	0.51%	220,826	0.80 %	△37,125	△16.81%
405	자산취득비	156,800	0.43%	4,500	0.02 %	152,300	3384.44%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6,800	0.43%	4,500	0.02 %	152,300	3384.44%
800	예비비및기타	26,392,191	72.62%	15,697,711	57.02 %	10,694,480	68.13%
801	예비비	26,338,891	72.48%	15,637,411	56.80 %	10,701,480	68.44%
	801-01 일반예비비	26,338,891	72.48%	15,637,411	56.80 %	10,701,480	68.44%
802	반환금기타	53,300	0.15%	60,300	0.22 %	△7,000	△11.61%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5,000	0.04%	15,000	0.05 %	0	0.00%
	802-02 시·도비보조금반 환금	5,000	0.01%	5,000	0.02 %	0	0.00%
	802-03 과오납금등	33,300	0.09%	40,300	0.15 %	△7,000	△17.37%